2021. 이리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2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7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7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3장 학생생활	제3장 학생생활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제20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⑥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착용한다. (단, 신체 특성상의 이유로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제20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⑥ 실내에서는 흰색실내화를 착용한다. (단, 신체 특성상의 이유로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지 못할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mark>휙합</mark> 모임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행에 힘써야 한다.
-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 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 사, 체험활동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 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 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 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 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9조【금지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어린이회 조직】민주적 자치능력을 기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어린이회와 전교어린이회를 두며 어린이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수 있다.

- 1. 생활부 : 학교 및 학급생활에 관한 제반사항
- 2.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사항
-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행에 힘써야 한다.
-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 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급한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 사, 체험활동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 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 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 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 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3.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 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 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4.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 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6.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다

제29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 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 용하고,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생회에 재논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어린이회 조직】민주적 자치능력을 기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어린이회와 전교어린이회를 두며 어린이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수 있다.

- 1. 생활부 : 학교 및 학급생활에 관한 제반사항
- 2. 미화부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사항
-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학습부 : 학습준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5. 독서부 : 학교 및 학급 내에서의 독서에 관한 제반사항
- 6. 기타 부서 :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에서 필요하다고 심 의된 부서

제34조【전교어린이회】

- 임원
 - 1. 회장 1명, 부회장 2명(6학년, 5학년 각 1명)을 둔다.
 - 2. 각 학급 회장, 부회장

②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는 학우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할 수 있다. (성별, 성적, 재학 기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음)
- 3.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③ 회의

-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에 의거 정해 진 날짜에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 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4.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 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 생활지도

- 제3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교육 벌】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경우, 체벌(體罰)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벌을 줄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4. 학습부 : 학습준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5. 독서부 : 학교 및 학급 내에서의 독서에 관한 제반사항
- 6. 기타 부서 :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에서 필요하다고 심 의된 부서

제34조【전교어린이회】

- ① 임원
 - 1. 회장 1명, 부회장 2명(6학년, 5학년 각 1명)을 둔다.
- 2. 각 학급 회장, 부회장

②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는 학우 10인 이상 유권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할 수 있다. (성별 성적, 재학 기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음)
- 3.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③ 회의

-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에 의거 정해 진 날짜에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 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이 이를 소집한다.
- 4.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5.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 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 생활지도

- 제3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교육 별】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외에도 학업대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 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학교 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벌을 줄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및 보고서 제출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 벌을 줄 때에는 교육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교육 벌 2. 사회봉사 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3. 특별교육 이수 및 보고서 제출 제40조【교육 별 기준】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 벌을 줄 때에는 교육 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였으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나,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전면 금지하며 아래와 같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은 방법으로 체벌을 대체한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교육 벌 -1.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책임지도 서약을 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다짐한다. **제40조【교육 벌 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 -2. 학생과 함께 가족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실시 후 인 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였으 중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나,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전면 금지하며 아래와 같 3. 익산시 wee 센터와 연계하는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은 방법으로 체벌을 대체한다. 제41조【교육 벌 대상】교육 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1.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책임지도 서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짐한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학생과 함께 가족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실시 후 인 -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 정신 • 인격적 피해 증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를 입하는 행위 3. 익산시 wee 센터와 연계하는 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제41조【교육 벌 대상】교육 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5.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제41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 정신 • 인격적 피해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를 입히는 행위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5.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제4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추가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추가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4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 추가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 인권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

2. 사회봉사

- 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또한 사안의 종 류에 따라 담임교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또는 학부모 대표 등이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 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징계 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 제4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3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9조【징계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 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 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 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 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정리활동
 -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 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 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 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51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 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부칙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정한다.	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자문을 거친 후 학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
제45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제45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제5장 개정 방법	제 <mark>5</mark> 6장 개정 방법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당을 모을 러시기 무엇이되고 한당을 때는 사람이 당 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S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
	제53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
	게디어도 『되게 거거나기 위기』
	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3일 이내에
	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
	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